

학생복지시설 운영 규정(안)

(제정 2022. 2. 28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학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학생복지시설이란 본교의 학생공간 등 재학생의 다양한 자치 및 과외 활동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학생공간: 재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회관 내 동아리실 및 학생회실 등의 공간
2. 편의시설: 교내 식당 및 공공시설 등 재학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공공시설: 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 등
 - 나. 식당
 - 다. 서비스시설: 대학서점, 복사점, 안경점, 여행사, 문구점, 편의점 등
 - 라. 휴게시설: 카페, HATCH 라운지 등
3. 공용공간: 본교의 각 부서 및 구성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
 - 가. 문화시설: 희망홀, 도서관(소극장, 하늘정원 등), 노천극장, 수퍼스타홀, 하림미션홀, JJ아트홀, 리싸이틀홀, 온누리홀, 박물관 등
 - 나. 체육시설: 축구장, 농구장, 족구장, 테니스장, 실내체육관, 휘트니스센터, 골프장 등
4. 학생건강지원시설: 보건실 및 심리안정지원실, 힐링센터, 카운슬링센터, 인권센터 등
5. 교육지원시설: 도서관, 박물관, 정보통신원, 학생서비스센터
6. 학생생활관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생공간과 편의시설에 적용하며, 그 밖의 학생복지시설은 「학교시설물 사용규정」, 「공간관리 규정」, 「공간관리 세칙」, 「학생생활관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운영

제4조(운영의 기본방향) ① 학생복지시설은 본교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, 학생과 학생자치기구의 필요 요청에 따라 학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학생공간은 학생들의 자치활동, 학술활동 등 학생자치기구가 진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편의시설은 학생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리부서) 학생복지시설의 관리부서는 「학교시설물 사용규정」, 「공간관리 세칙」 등 시설별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제6조(개방 및 폐쇄) ① 학생복지시설 개방 및 폐쇄 시간은 각 시설별로 정하며, 공휴일 및 본교 기념일 또는 휴무일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학생복지시설은 학생 또는 관련 부서 및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.

③ 학생복지시설은 관련 부서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개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, 개방 또는 폐쇄될 수 있다.

④ 학생복지시설의 대관은 「학교시설물 사용규정」, 「공간관리 세칙」 등 시설별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제7조(점검평가 및 관리)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 학기 편의시설의 위생 및 운영에 대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매년 1회 이상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점검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학사모니터 제도를 통한 모니터링과 평가로 같음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중지 및 제한) ① 학생복지시설의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② 학생복지시설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 금지 및 제한 조치될 수 있으며, 관련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판매
2. 허가되지 않은 행사 및 시설 사용
3. 허가되지 않은 문서 또는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행사 또는 행위
4. 허가되지 않은 집단 행사 또는 행위
5. 본교의 건학이념 및 학칙에 위배되는 행사 또는 행위

③ 관리부서는 감염병 사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설치) 학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.

③ 학생지원실장, 기획예산실장, 총무지원실장,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 2명을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생지도 담당자가 된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2.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3. 그 밖에 학생복지시설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세부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